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·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·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,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“위기아동·청년”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아동·청년, 고립·은둔아동·청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, 가족돌봄아동·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(안 제2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「청년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·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3년마다 위기아동·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(안 제6조 및 제8조).
- 위기아동·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접수와 초기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,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초기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).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, 건강관리 지원, 학업 및 취업지원, 주거지원, 가족돌봄아동·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·은둔아동·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(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·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·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·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·청년 정책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·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·기관·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·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.

II. 검토의견

- 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제5조는 ‘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되, 다른 법률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’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, 그 밖에 법문의 표현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기관 의견

- 여성가족부는 안 제2조제1호다목¹⁾은 위기아동·청년을 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기상태에 놓인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지원하는 위기청소년, 가정 밖 청소년과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그 지원대상이 중복되는데, 안 제5조는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면서도 다른 법률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안 제5조를 다른 법률에 규정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음.

제 정 안	여성가족부·보건복지부 수정 의견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기아동·청년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(전문위원 이 은 정)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기아동·청년”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가목의 가족돌봄아동·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.

가. 가족돌봄아동·청년 :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·간병·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
나. 고립·은둔아동·청년 :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기상태에 놓인 사람